

의안번호	제433호
의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제316회)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2년 12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3
----------	-----

제출연월일 : 2012. 12 . 04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알기 쉽도록 하고,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위임된 사용료 징수금액에 관한 사항 등은 조례로 정하고, 시설·설비의 사용신청 및 허가, 기관의 운영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함(안 제2조)
- 나. 공공기관은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되,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설비의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본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을 정함(안 제4조)
- 라. 학생 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각종 행사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실험기구, 교구,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공급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교육 관련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함(안 제6조)
- 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팅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함(안 제6조)
- 사. 과오납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함(안 제7조)
- 아. 시설·설비의 사용신청 및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시간 및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12.9.28.~2012.10.18.(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행정과 협의결과 이견 없음(2012.10.15.)

(3) 부패영향평가 : 감사관실 협의결과 이견 없음(2012.10.9.)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 공공기관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은 수련기관 공동사용을 위해 타 시·도 교육감과 협약 체결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금액) ①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1에서 별표 4와 같다.

②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과 같다.

제5조(실비 징수)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공공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숙박비, 식비, 교재비, 재료비,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험기구, 교구,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유치원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생 관련 교육 행사
2.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4. 공공기관의 설치 목적에 상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공공기관의 행사

5.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장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인 경우 돌봄인 1명

6. 65세 이상 노인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제8조(시설·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 및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충청북도중앙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후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2]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기준)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공 연 장	오전	120,000원	○ 기준시간(4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무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건전지 사용자 부담) ○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시 기준사용료의 50%징수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영화음악감상실	오전	30,000원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전시실 내부(1일)		20,000원		
	전시실 외부(1일)		10,000원		
	부속 설비	피아노(1회공연)			40,000원
		프로젝터(1회공연)			20,000원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보면대(1개당)		1,000원	
		드라이아이스(1회공연)		30,000원	
		포그머신(1회공연)		20,000원	
		덧 마 루(1일)		30,000원	
		합 창 대(1일)		30,000원	
		무용매트(1일)		70,000원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기본조명(1시간)		30,000원	
		통핀(2Kw)(1회공연)		20,000원	
		무빙라이트(1회공연)		5,000원	
		귀 빈 실(1일)		40,000원	
		난 방		실사용량	
냉 방		실사용량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 화 원	수영장 (경영플장)	일일입장	초등학생이하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초등학생이하 : 13세 미만 ○ 중·고등학생 : 13세 이상 19세 미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자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 강습료는 월 회비에 10,000원을 추가(스킨스쿠버 제외) ○ 단체는 15인 이상 적용 ○ 다이빙장은 지도강사 입회시 사용 가능 ○ 스킨스쿠버용 압축공기통 사용시 1개당 7,000원 추가
			중·고등학생	2,000원	
			일반인	3,000원	
		월회원	초등학생이하	30,000원	
			중·고등학생	35,000원	
			일반인	50,000원	
		단체입장	초등학생이하	1,000원	
			중·고등학생	1,500원	
			일반인	2,500원	
	수영장 (다이빙장)	일일입장	스킨스쿠버	10,000원	
			초등학생이하	2,5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일반인	4,000원	
		월회원	스킨스쿠버	170,000원	
			초등학생이하	50,000원	
			중·고등학생	55,000원	
			일반인	70,000원	
		단체입장	스킨스쿠버	7,000원	
			초등학생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인	3,500원	
수영장 (전용)	경영플장(시간당)		2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휴일 및 야간사용(동계 17:00 이후, 하계 18:00이후)시 시간당 30퍼센트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월회비 3월이상 선납지는 해당 기간 면제 	
	다이빙장(시간당)		100,000원		
	개인사물함(월)		3,000원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3]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 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숙박비	진천시설	무 료	무 료	3,000원	○ 1인 1박 기준
		보령시설	1,000원	20,000원 (30,000)	30,000원 (40,000원)	○ 학생은 1인 1박 ○ 공무원 및 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는 1실1박 기준 ○ ()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설사용료 (진천시설)		무 료	무 료	50,000원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강당 사용료		무 료	무 료	50,000원	○ 1일 기준
	강당 냉·난방비		무 료	무 료	실 비	○ 유류사용량에 따라 사용 당시의 유류가격 적용 ○ 에어컨 사용시 전기 사용 량에 따라 요금적용
	교재발간시 교재비		무 료	무 료	실 비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 교장의 신청에 의거 수련원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4]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1항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오전	100,000원		
충청북도 충 주 학생회관	공연장		오후	120,000원	○ 기준시간(4시간)을 초과 사용할 때는 매 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야간	150,000원		
			전시실(1실당)			20,000원
	공연장 부 속 설 비	피아노(1회공연)		40,000원		○ (사용전 예비사용시간 포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토요일, 공휴일에 사용할 때는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단, 냉·난방은 제외) ○ 피아노 별도 조율시는 사용자 부담 ○ 유선마이크 3개 기본 무료 ○ 조명사용료는 연습 및 무대장치 설치를 위한 준비시 기준사용료의 50%징수 (단,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적용) ○ 모든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프로젝터(1회공연)		20,000원		
		DVD녹화(1회공연)		30,000원		
		유선마이크(1개당)		5,000원		
		무선마이크(1개당)		5,000원		
		핀마이크(1개당)		10,000원		
		보면대(1개당)		1,000원		
		드라이아이스(1회공연)		30,000원		
		포그머신(1회공연)		20,000원		
		덧 마 루(1일)		30,000원		
		합 창 대(1일)		30,000원		
		무용매트(1일)		70,000원		
		음향반사판(1회공연)		30,000원		
		기본조명(1시간)		30,000원		
		통핀(2Kw)(1회공연)		20,000원		
		무빙라이트(1회공연)		5,000원		
		귀 빈 실(1일)		40,000원		
		냉·난방		1회당 50,000원		
	조 명		1시간당 30,000원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이상 적용
			단체	400원		
		일반	개인	1,000원		
			단체	800원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후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별표 5]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징수액	비고	
증원도서관 청원도서관 보은도서관 옥천도서관 영동도서관 진천도서관 괴산도서관 증평도서관 음성도서관 금왕도서관 단양도서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A4-B5
	인쇄료 (디지털자료실)	후백	A3-B4	80원	1매당
			A4-B5	50원	"
		칼라	A4-B5	500원	"
	시설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등)			20,000원	1일기준

[별표 6]

제천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제 천 학 생 회 관	롤 러 스 케 이 트 장	학 생	개 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 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단 체	400원	
		일 반	개 인	1,000원	
			단 체	800원	
	수 영 장	학 생	개 인	500원	
			단 체	400원	
		일 반	개 인	1,000원	
			단 체	800원	
	복 사 료	A3-B4		40원	1매당
		A4-B5		30원	"
	인 쇄 료 (디 지 털 자 료 실)	후 백	A3-B4	80원	"
			A4-B5	50원	"
칼 라		A4-B5	500원	"	

[별표 7]

지역교육청 소속 학생야영장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사용구분	징 수 액			비 고
		학 생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중원학생야영장 제천학생야영장 옥천학생야영장 영동학생야영장 청천학생야영장	시설사용료	무 료	무 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1. 본 표 중 학생, 교직원의 범위는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학생·교직원으로서, 학생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거 야영장장이 허가한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2. 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은 1호에 준함.
3. 대학생과 1호 및 2호 이외의 학생은 기타에 준함.

[별표 8]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기관명	구분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공공단체 및 기타	비 고
충청북도 교 직 원 복 지 회 관	객 실 사용료	4인실	20,000원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실 1박기준 금액임 ○ 1일은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를 기준으로 함
		10인실	30,000원	40,000원	
	시설사용료		무료	5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기준(단체) ○ 100명 초과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비 별도실비 적용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이하생략)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을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8. (생략)	(생략)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다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8. (생략)	(생략)
9. 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공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공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 4. (생략)	(생략)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6. ~ 9. (생략)	(생략)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현행 조례 주요내용 및 정비안

현행조례	정비안	비고
[제4조, 제10조] ○ 교육과학연구원 운영 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음 ○ 도서관 도서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	- 법령 근거 미비로 삭제 -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공공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으로 삭제	삭제
[제5조, 제7조, 제36조의2, 제46조] ○ 교육과학연구원 실험기구 제작비 실비 징수 ○ 연수원·외국어교육원 숙식비, 교재비 실비징수 ○ 공동실습소 재료비 실비징수	- 수익자 부담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비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18조, 제29조, 제36조, 제36조의3, 제42조]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특회계에 계상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관한 사항 ※ 법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삭제	<삭제>
[제11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8조] ○ 공공기관 이용 절차 및 신청서 서식	- 사용신청 절차 및 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함	규칙안 제2조
[제1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8조, 33조, 제33조의2, 제39조, 제39조의1] ○ 공공기관 사용료 ○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반환	- 조례로 존치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 공공기관의 개방시간, 휴관일, 근무시간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함	규칙안 제5조 제6조 제7조

현행조례	정 비 안	비고
[제14조] ○도서 및 자료의 관외대출 제한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함	규칙안 제9조
[제15조, 제24조, 제34조, 제40조, 제44조] ○공공기관의 사용제한(질서혼란자, 전염병 우려자 등) ○사용자 준수사항 미이행자 퇴관 또는 퇴원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함	규칙안 제3조
[제19조, 제30조, 제37조, 제43조] ○공공기관 사용 대상자	- 공공기관 개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비	조례안 제3조
[제16조, 제25, 제35조, 제41조, 제45조] ○사용자의 책임	-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함	규칙안 제4조